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36
----------	-------

발의연월일 : 2026. 5. 21.

발 의 자 : 이정현 · 허성무 · 박홍배
강준현 · 박선원 · 김병주
김우영 · 김 현 · 손명수
정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물리적 설비의 제공 및 네트워크 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가 해당 기능과 상호운용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축소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상호운용성 확보) 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가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조건으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기본 운영체제의 보안성·무결성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접근수단의 범위·제공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를 “앱 마켓사업자, 제12호의 경우에는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가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40조의2(상호운용성 확보) ①</u> <u>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u> <u>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u> <u>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u> <u>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공하는</u> <u>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u> <u>자(이하 “모바일운영체제사업</u> <u>자”라 한다)는 다른 전기통신</u> <u>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가 해당</u> <u>이동통신단말장치의 하드웨어</u> <u>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용할</u> <u>수 있도록 자신의 소프트웨어</u> <u>와 동등한 조건으로 기술적 접근</u> <u>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u> <u>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또</u> <u>는 기본 운영체제의 보안성·</u> <u>무결성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u> <u>한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u> <u>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접근 수단의 범위·제공 조건·절차</p>

